

부가가치세법(간이과세 기준액 인상) 개정 촉구 건의

의안 번호	2939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. 12. .

발의자 : 정승현 의원

1. 주 문

-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 제도는 1999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17년간 기준금액이 인상되지 않아,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으므로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위한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함.

2. 제안이유

- 간이과세 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, 신고·납부 등 제반의무를 단순화하여 세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1999년 말 이후 17년 동안 연매출 4,800만원 미만자를 대상으로 유지되고 있음.
-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소비자 물가지수(2010년 = 100)는 1999년 11월에는 72.099 이었으나 2016년 10월에는 111.48로 40% 이상 상승하여 간이과세 제도가 물가상승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- 이에 따라 상당수 영세 상인들이 실질 매출액의 변화 없이도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영세 상인들의 세무상 부담을 완화한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.
- 또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이 확대되어 세원의 투명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간이과세 제도가 거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움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제도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음.
-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의 본문 중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“4,800만원 미만”에서 “1억원 미만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.

3. 부가가치세법(간이과세 기준액 인상) 개정 촉구 건의안 : 붙임

부가가치세법(간이과세 기준액 인상)개정 촉구 건의안

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1999년 이후 17년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의 기준금액이 4,800만원으로 동결되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, 간이과세의 기준액을 1억원으로 인상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.

간이과세 제도는 영세 상인들의 세무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제도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와 장부기장의 의무가 면제되고, 업종별로 매출액의 1.5 ~ 4%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있으나 그간 물가상승, 소득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을 고려하면, 간이과세 기준액의 상향조정은 시급한 실정이다.

첫째, 기준액에 묶여 있던 17년동안 물가는 40% 상승하였다.

1999년도 72.099였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2016년 10월 기준 111.48로 40% 인상되었고, 골목골목 대형마트의 잠식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간이과세 대상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, 간이과세자가 2000년 전체 자영업자의 53.6%에서 2016년 32.3%로 크게 줄어들었다.

그 결과, 상당수 영세 상인들이 실질 매출액의 변화와 관계없이 물가인상만으로도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다.

둘째,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의 정착화로 세원의 투명성이 확보되었다.

지난 17년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제도가 정착화되면서 거래의 투명성 제고로 안정적으로 세원이 확보되고 있다.

1999년 전체 민간소비 지출액 275조원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43조원(15.5%)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소비된 금액은 618조원으로 전체 민간 소비 지출액 771조원의 80.1%에 이르고 있다.

결국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제도만으로도 매출액의 최소 80% 이상이 국세청에 노출되는 등 거래의 투명성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행되는 간이과세제도가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.

그러므로 중앙정부에서는 물가인상, 소득 및 거래 투명성의 제고 등을 고려하여, 어려운 환경에서도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간이과세 기준액을 현행 4,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.

2016. 11.

안산시의회 의원 일동